

1. 개정 이유

전기 이륜자동차의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을 신설하고,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발생기준을 개선하며,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 정비 및 옆보기 좌석 설치 금지 기준 마련(안 제13조 및 제25조)

화물·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옆면을 향한 좌석(옆보기좌석) 설치 금지 기준을 마련함.

나. 승합자동차 구조 및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29조, 제30조, 제53조 및 제53조의2)

승강구 및 비상탈출장치 등 국제기준과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히 하고, 경음기 및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기준을 명확히 함.

다. 끝단표시등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40조의2 및 제102조의2)

대형자동차 후미단 등화장치를 끝단표시등으로 적용하고 유연형하부 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라. 이륜자동차 안전성 기준 마련(안 제69조의3, 제69조의4 및 제64조)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공기압타이어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공유구역”이란 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가 표시되는 구역 중에서 2개 이상의 식별표시,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
66. “자동차의 3차원 기준좌표계”란 차량중심선을 x축(앞쪽 ‘-’, 뒤쪽 ‘+’), 너비방향을 y축(오른쪽 ‘-’, 왼쪽 ‘+’), 높이방향을 z축(아래쪽 ‘-’, 위쪽 ‘+’)으로 하고 수직중단면 x-z, 수평면 x-y, 수직횡단면 y-z로 구성되는 좌표계를 말하며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 목 단서 중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를 “공유구역에”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령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변축 인접축에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축별설계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적재하중”을 “다음 각 호의 하중을 초과한 하중”으로, “불가능한”을 “불가능해야 하며, 차량총중량 상태에서 하향하여 인접축 하중의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하중을 분담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변축 인접축에 제6조에 따른 축중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축별설계허용하중(축별설계허용하중이 제1호에 따른 축중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해 가변축을 일시적으로 조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변축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 축의 하중이 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최대 15톤까지)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수동조작장치를 사용하여 가변축을 상승조작하는 경우 자동차 전방 방향으로 가변축보다 앞쪽에 설치된 차축 중 최소 1개 이상은 지면

에서 들리지 않을 것

3. 험로 탈출 등 일시적으로 조작한 후 매시 30킬로미터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하강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일 것

제15조제1항제6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를 “자동차”로 하고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30조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호 단서 중 “설치할”을 “설치할 수”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앞면”을 “자동차의 앞면”으로,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을 “1개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 옆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추가

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광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하거나 발광면이 전방을 향할 경우: 백색

나.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하거나 발광면이 후방을 향할 경우: 적색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은 제외한다)

는”을 “자동차에는 경음기를”로, “적합하여야 한다”를 “적합하게 설치해

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일”을 “경적음은 동일”로, “내는

것일”을 “내야 하며, 소리의 크기가 일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를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로, “값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을 “경

적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을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pm y$ 방향으로 각각 1,000밀리미터인 지점에

서 x축과 평행한 선을 좌·우 한 번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 2,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y

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번으로 하는 수평면 상의 직사각형

영역에 설치된 직경 89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제5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4. 경고음의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자동차 좌·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 1,0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직사각형 영역을 말한다)에 있는 직경 76밀리미터·높이 1,000밀리미터의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일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103조제1항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에

설치되는 어깨부분부착장치가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보다 낮은 범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부분부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높이조절장치 등이 있어 어깨부분 안전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나. 높이조절장치 등이 탑승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제108조의2제2항제1호 중 “소형화물자동차”를 “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나목”을 “가목2)”로 한다.

별표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구조 및 성능 기준
Ⅱ. 이륜자동차 공기압타이어의 표기·설치·치수 및 성능 기준 제3호가목1) 중 “전체”를 “단면”으로 하고, “얻어지는 단면 너비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를 “구할 것”으로 하며, 주)는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단면 너비”란 공기압을 주입하여 팽창된 타이어의 사이드월 외측면이 이루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타이어의 표기 또는 립 보호 목적의 고무 돌출부 등으로 인한 높이 등을 제외한 너비를 말한다(그림 6 참조)

별표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구조 및 성능 기준

II. 이륜자동차 공기압타이어의 표기·설치·치수 및 성능 기준 제3호가
목2) 중 “아래”를 “다음”으로 하고, “값까지 초과할 수 있다.”를 “값 이하
일 것”으로 하며,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주)외의 부분은 제2
호로 한다.

1. “전체 너비”란 공기압을 주입하여 팽창된 타이어의 사이드월 외측
면이 이루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타이어의 표기 또는 림 보호 목적
의 고무 돌출부 등으로 인한 높이 등을 포함한 너비를 말한다. 트레
드가 단면 너비보다 큰 타이어의 경우, 전체 너비는 트레드 너비와
일치한다(그림 6 참조)

별표 2 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주)
중 제7호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등화점등장치 작동 시 계기판넬에 조명이 켜지는 경우 등
화점등장치 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유구역을 사용하여 식별표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한다.

가.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주행빔전조등자동표시기, 방향지시등자
동표시기 및 안전띠자동표시기(이하 ‘주요 표시장치’라 한다.)의 식
별표시는 동일한 공유구역 내에 함께 표시할 수 없다.

나. 2개 이상의 표시장치에 대한 식별표시가 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이 발생한 순서대로 식별표시를 공유구역 내에 자

동 반복하여 표시하거나 운전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공유구역 내에
서 식별표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주요 표시장치와 그 외 표
시장치의 식별표시가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주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를 다른 장치의 식별표시 보다 우선하
여 표시해야 한다.

다. 공유구역에 표시된 식별표시 중 주요 표시장치가 아닌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9. 오일압력자동표시기와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식별부호는 동일한
식별표시로 표시할 수 있다.

20. 변환빔전조등자동표시기, 오일압력자동표시기, 냉각수온도자동표시
기, 충전자동표시기의 경우 작동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색상으
로 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21. 자동변속기 변속단수의 전진위치를 표시하는 문자는 추가 선택모드
를 나타내기 위해 제작자가 정한 영문자, 숫자 및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의5의 제목 중 “제15조제13항”을 “제15조제14항”으로 한다.

별표 5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승객거주 공간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활선
도체부는 IPXXD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별표 5의8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 제1호나목 중 “2초”를 “0.2초”

로 하고 “제111조의2”를 “제107조”로 한다.

별표 5의30 및 별표 5의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12 제1호가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뒷면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자동차 중앙 수직 중단

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같은 별표 같은 호 같은 목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

2) 중 “끝단표시등의 발광면은 차폭등 또는 후미등의 발광면으로부터 수직거리가”를 “끝단표시등과 차폭등 또는 후미등의 발광면 사이의 최단거리는”으로 한다.

다) 추가로 설치되는 끝단표시등은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가

능한 한 분리하여 설치할 것

별표 6의30 제1호가목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승강구가 좌·우측 중

한쪽에만 있는 자동차에는 승강구가 있는 쪽만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라목 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하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측기준

승하차보조등의 발광면은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면, 옆면, 뒷면 각 방향

으로 10미터 거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 1미터와 3미터 거리의

수평면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발광면이 직접적으로 관

측되지 않을 것

별표 7의2 제11호 순번 1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1) 중 “22”를 “23”으로

하고 “입석이 가능한”을 “입석공간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순번 적용대

상 차종란의 가목2) 중 “22”를 “23”으로 하고 “입석정원이 좌석정원보다

많은”을 “순번 2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2) 또는 3)에 해당하지 않는”로

하며, 같은 순번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3)을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11

호 순번 2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1) 중 “22”를 “23”으로 하며 “입석”을

“입석공간”으로 하고, 같은 순번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2) 중 “22”를

“23”으로 하며 “좌석정원이 입석정원보다 많은”을 “좌석공간만 있는”으

로 하고, 같은 순번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차정원 23인 초과이고 주로 좌석공간이 있는 구조이나 2개의 2인

용 좌석공간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에 해당하는 별도 공간 또는 통로

공간에 일부 입석공간이 있는 구조

별표 11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 기준(제91조제7항 관련)

다음 시험조건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시 험 조 건	연 료 장 치 기 준
1. 완성차의 전복시험	충전구와 충전용 배관을 제외한 연료장치(용기, 용기밸브, 배관 및 연결장치 등)가 지면 또는 차체(변형이 발생되는 순간을 모두 포함한다)에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
2.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 차체구조물의 전복시험	
3. 완성차의 수학적 해석에 의한 전복시험	

별표 14의6의 구분 1. 보행자머리모형에 대한 상해기준란 본문 중 “호를”을 “목을”로 하고, 구분 2. 보행자다리모형에 대한 상해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구분 3. 보행자머리충격부위 및 보행자 다리충격부위 상해영역 구분에 대한 상해기준란의 본문 중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 경골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를 삭제한다.

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대 동적 전·후방십자인대 신장변위는 13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최대 동적 내측측부인대 신장변위는 22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경골의 동적 굽힘모멘트는 340뉴턴미터 이하일 것. 다만 제작사가 지정하는 보행자다리충격부위 폭의 합이 264밀리미터까지는 경골의 동적 굽힘모멘트가 380뉴턴미터 이하일 것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충격 하중의 합이 7.5킬로뉴턴 이하일 것 나. 굽힘 모멘트는 510뉴턴미터 이하일 것

별표 5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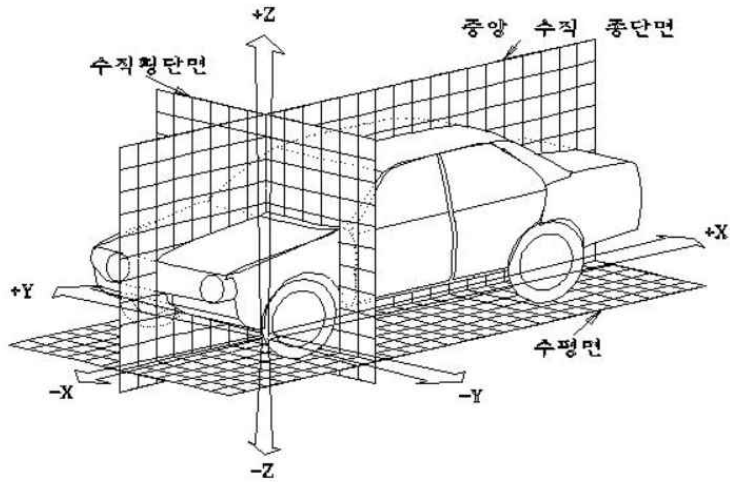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3조의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14의6: 2022년 1월 1일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3]

자동차의 3차원 기준좌표계(제2조제66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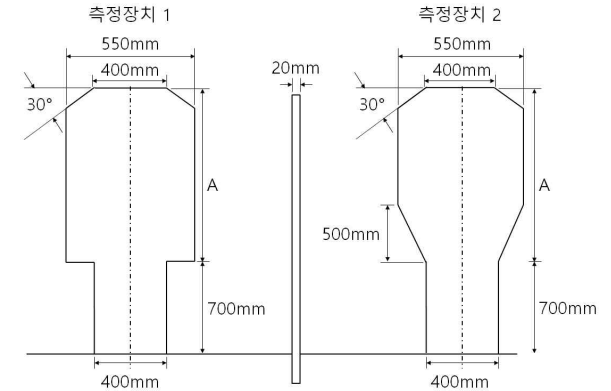


[별표 5의30]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승강구 일반기준

승강구는 다음 표에서 정의한 승강구 측정장치 1 또는 측정장치 2가 통과되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유형	상단패널 높이 (A, 단위: mm)	
	측정장치 1	측정장치 2
승차정원 16인 이상 23인 이하 승합자동차	950 ^{주)}	950
승차정원 16인 이상 23인 이하 좌석전용 승합자동차	700 ^{주)}	950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1,100	1,100
입석의 수보다 좌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950	1,100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좌석전용 승합자동차	850	1,100

주) 승차정원 16인 이상 23인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하단패널은 동일 방향으로 상단패널 범위 내에서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2. 승강구 설치 기준

가. 일반 기준

- 1) 승강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아래층에 2개, 입석수가 좌석수보다 많은 굴절버스는 앞·뒤 각각 1개 이상의 승강구를 설치해야 한다.
- 2) 전동식 승강구 중 비상시 조작장치 작동 후 손조작력으로 열 수 없을 경우 비상탈출장치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3) 승강구는 자동차의 우측면에 설치해야하고,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설치된 승강구를 제외하고 1개 이상의 승강구를 자동차 길이방향의 앞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 가) 휠체어 사용자 승하차를 위해 자동차 뒷면 또는 측면에 설치된 승강구
 - 나) 수화물 적재를 위해 자동차의 뒷면 또는 측면에 설치된 승강구
 - 다) 자동차의 좌측면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장치를 통해 작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승강구
- 4) 승객공간이 10m²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승강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승강구 면적의 중심을 지나는 횡단수직면 사이의 간격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굴절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승객 공간 전체 길이의 40% 이상일 것
 - 나)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아래층에 대하여 자동차 전체 길이의 25% 이상 또는 승객 공간 전체 길이의 40% 이상일 것
- 5) 정지상태에서 내·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외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6) 자동차의 외부에서 승강구를 열기위한 장치는 지상으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승강구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 7) 승차정원 23인을 초과 승합자동차의 내부에서 승강구를 열기 위한 장치는 차실 바닥면 또는 계단 상부로부터 1,000mm부터 1,500까지 높이이고, 승강구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장치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힌지형 또는 회전형 구조로 된 수동조작 승강구는 승강구가 열려진 상태로 전방으로 운행 될 경우 승강구가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 9) 문걸쇠장치가 장착된 수동 조작 승강구는 이중잠금 구조여야 한다.
- 10) 승강구가 내부로 닫힐 때 계단 등 내부구조물과 승객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11) 운전자가 승강구 내·외부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입석수가 좌석수 보다 많은 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승강구 내부, 계단 및 위층 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 12) 승차정원 2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되는 경우 열림 각도는 85도부터 115도까지이고, 열림이 완료된 위치에서 자동으로 고정되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높은 승강장의 승차 목적, 자동차 후방에 확인된 확실한 승차 공간을 통한 승차를 허용하기 위하여 270도까지 승강구를 열리도록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승강구 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나. 승강구에 외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 1) 시동키가 "ON"의 위치에 있을 때 비활성화 되어야한다.
- 2) 시동키가 "ON"의 위치에 있을 때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이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승강구에 동시 사용할 수 있다.

다. 운전자에 의해 작동되는 전동식 승강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비상시 승강구는 정지상태 또는 매시 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내·외부에서 열림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외부의 경우 잠금장치가 활성화 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승강구 조작장치 작동시 우선해서 열릴 것
 - 나) 내부 조작장치는 승강구로부터 300mm 이내, 제1단 발판 위 1,000m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할 것.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출발 방지장치가 작동되어도 될 것
 - 라) 조작장치 작동 시 8초 이내에 승강구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을 것
 - 마) 비상조작장치에는 제거가 용이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작장치의 작동 또는 보호커버 제거시 운전자에게 시각 및 청각으로 경고 할 것
 - 아) 제2호다목적5)다)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승강구의 경우 문을 열기 위하여 조작장치를 작동시킨 후 다시 정상 위치로 복귀되더라도 운전자가 별도로 닫힘 조작을 하기 전까지는 닫히지 않을 것
 - 자) 승강구는 자동차 매시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 것
- 2) 외부에 설치된 비상조작장치의 작동방지장치는 운전석에 앉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작동방지장치의 비상조작장치 비활성화 기능은 운전자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되며, 원동기 시동 시 또는 매시 20킬로미터 이전에 비활성화 기능이 해제되어야 한다.
- 3) 운전자에게 승강구가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시각적 경고는 승강구가 열린

- 위치에서 닫히기 전 30mm 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시각적 경고 식별표시로 2개 이상의 승강구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5)가)·나)를 만족하지 않는 승강구라 하더라도 차체 앞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각적 경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4) 승강구 개폐 조작장치는 승강구가 열리고 닫히는 도중이라도 운전자에 의해 반대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5) 전동식 승강구가 닫힐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승강구의 중간 지점과 아랫 끝부분에서 위로 150mm 인 지점에서 150N 이하의 하중(일시적으로 150N을 초과할 수 있지만 300N을 초과할 수 없음)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완전 열림 상태로 되어야 하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 이 경우 높이 60mm, 너비 30mm, 모서리 부분의 곡률반경이 5mm 단면을 가진 측정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 나) 승강구에 손가락이나 손목이 끼이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열려 있는 승강구를 닫기 위해 조작을 하기 전 까지 열린 상태를 유지할 것
- (2) 높이 300mm, 윗면의 지름 5mm, 아랫면의 지름 30mm인 원뿔대 형태의 측정장치가 빠질 수 있을 것
- (3) 높이 60mm, 너비 20mm, 모서리 부분의 곡률 반경 5mm인 단면을 가진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위치(승강구 완전 닫힘 위치로부터 30mm 이하 떨어진 위치를 말한다)가 유지될 것
- 다) 전면 승강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강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제2호다목5)가)·나)에서 정한 기준
- (2) 끝부분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경우(제2호다목5)가)에서 정한 측정장치로 측정할 때 승강구의 단단한 구조물이 완전 닫힘 상태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전동식 승강구가 연속적으로 전원 공급을 받음으로써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전원이 끊어졌을 때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 7) 승강구가 열려있을 때 자동차의 출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개문출발방지장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을 때 매시 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 8) 개문출발방지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을 때 승강구가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청각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 라. 자동식 전동 승강구(운전자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활성화 된 후 승객

의 조작에 의해 열릴 수 있는 전동식 승강구로서 자동으로 닫히는 승강구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자동식 전동 승강구의 자동조작 활성화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 비상시를 제외한 모든 승강구의 열림 조작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는 운전자석에서 가능할 것
- 나) 운전자에 의한 열림 조작이 활성화될 경우 이를 표시하는 표시기가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구가 외부에서 열리는 경우에는 자동차 외부에도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조명 표시, 조명 누름 버튼 등과 같은 표시기는 해당 승강구 또는 해당 승강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다) 스위치 조작에 의해 직접 작동되는 경우 자동식 전동 승강구의 기능 상태는 스위치의 위치, 지시 등화 또는 조명 스위치 등으로 운전자에게 지시되어야 하며, 스위치는 다른 조작 장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 2) 자동식 전동 승강구의 열림은 운전자에 의해 열림 조작이 활성화 된 후 승객이 다음의 조작을 하는 경우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 가) 내부의 경우 누름 버튼의 조작 또는 빛 감지기의 통과
- 나) 외부의 경우 조명 누름 버튼의 조작, 조명 표시 아래에 있는 누름 버튼의 조작 또는 적절한 표시를 가진 유사한 장치의 조작
- 3) 자동식 전동 승강구의 닫히는 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 자동 작동 승강구가 열렸을 때 일정 시간이 경과 된 후 자동으로 다시 닫혀야 하며, 자동 닫힘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나) 승강구가 닫히고 있는 중간에 승객이 승하차하고자 할 경우 안전장치 등을 활용하여 승강구는 다시 열리는 구조일 것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이 원활한 승·하차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승강구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자동 닫힘이 제한되어야 한다.
- 가) 운전자는 특별한 조작 장치를 작동시킴으로서 자동 닫힘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승객 또한 누름 버튼을 조작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 제2호라목4)가)에 따른 장치 작동 시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자동표시기를 설치할 것
- 다) 제한된 자동 닫힘 기능은 운전자에 의해서만 복구될 수 있을 것
- 라) 제한된 자동 닫힘 기능 이후의 닫힘 동작에 대해서 제2호라목3)에 따른 기준을 만족할 것

[별표 5의31]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

1. 비상탈출장치

가. 설치 개수

비상탈출장치는 승강구를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승강구와 비상문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각 차실의 승차정원(인)	각 차실 최소 출구 개수(개)
16 이하	3
17 ~ 30	4
31 ~ 45	5
46 ~ 60	6
61 ~ 75	7
76 ~ 90	8
91 ~ 110	9
111 ~ 130	10
130 초과	11

나. 설치 기준

- 1) 2층대형승합자동차(천정개방형의 위층은 제외한다)의 경우 아래층과 위층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과 탕비실 공간은 비상탈출장치 설치공간에서 제외한다.
- 2) 굴절버스의 경우 전·후방 차실 부분을 분리하여 적용한다(전·후방 연결통로는 승객공간에서 제외한다).
- 3) 승강구는 비상탈출장치에 포함되며, 별표 5의30에 따른 승강구 측정장치 2개가 동시에 통과하는 경우 2개로 간주한다.
- 4) 비상창문의 크기가 제3호가목에 규정된 비상창문의 크기의 2배 이상인 경우 2개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5) 승차정원 23인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 자동차 좌·우측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 나) 승객 공간 앞·뒷부분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 6) 비상탈출장치(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아래층과 위층을 별개로 한다)는 설치해야 하는 개수가 좌·우 균등한 개수로 설치해야 하며, 최소 설치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8) 입석인원이 좌석인원보다 많은 승차정원 23인 초과 승합자동차 및 입석이 있는 승차정원 23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비상탈출장치 개수를 초과하여 좌·우 양측면에 설치하는 경우 7)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 9)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에만 7)의 기준을 적용한다.
- 10) 승강구가 아닌 비상문은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수 있다.
- 11) 운전자석 공간의 경우 운전자 좌석을 최후방으로 조절했을 때, 별표 5의29에서 규정하는 통로 측정장치의 앞부분 모서리가 운전자석 등받이 전면부에서 수평방향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패널이 운전자석 쿠션 전면부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가) 운전자석에는 2개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출구는 동일한 측면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출구 중 하나를 비상창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운전자 좌석과 나란하게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출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 12) 운전자 좌석과 자동차 너비방향으로 나란하게 설치된 승객 좌석에서 제31조에 따른 통로가 설치된 경우 각각의 좌석에서 객실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경우 각각 벽면쪽에 출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3) 승차정원 23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운전자석에서 객실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자동차 운전자석에 승강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구로 간주할 수 있다.
- 14) 운전자석에 설치한 승강구는 승객석과 운전자석 사이에 격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15) 고전압 시스템, 위험물 액체 또는 가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등이 설치된 위치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다.
- 16)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경우 위층 비상탈출장치의 1개로 간주한다.
- 17)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에 탑승승객은 비상 시 아래층으로만 탈출이 가능해야 한다.
- 18)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승강구로부터 3m 이내에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승객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19) 승차정원 23인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좌석과 자동차 너비방향과 나란하게 설치된 승객 좌석이 1개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좌석옆 통로가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나 통로 승객석에 설치한 승강구가 별표 5의30에 따른 승강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비상탈출장치로 볼 수 있다.

- 20) 비상문, 비상탈출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비상문,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2. 비상문

비상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가. A형 비상문

- 1) 너비는 600mm, 높이는 1,450mm 이상일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각각 550mm 및 1,250mm 이상일 것
- 2) 승차정원 2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비상문이 바퀴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 비상문의 최하단으로부터 높이 400mm까지는 너비를 300mm로 할 수 있으며, 비상문 상부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150mm 이하로 적용할 수 있을 것
- 3) 정지상태에서 내·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외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4) 비상문이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경우 비상 시 조작장치가 작동 된 후 정상 위치로 복귀되더라도 운전자가 단힘 조작을 작동하기 전까지는 비상문이 다시 닫히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5) 전동식 비상문의 조작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8초 이내에 별표 5의30에 따른 승강구 측정장치가 통과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6) 미단이식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승차정원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제 102조제2항에 따른 충돌 시 차체구조기준 중 정면충돌 시험 후 도구 없이 비상문을 열 수 있는 경우에는 미단이식을 적용할 수 있다.
- 7) 자동차의 외부에서 비상문(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층)을 열기 위한 장치는 지상으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비상문으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 8) 승차정원 23인 초과 승합자동차의 내부에서 비상문을 열기 위한 장치는 차실바닥면 또는 비상문 계단 상부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비상문으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자동차의 측면에 고정되는 힌지 구조의 경우 힌지가 자동차 길이 방향의 앞부분에 설치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외부로 열리는 구조여야 하며, 100도 이상의 각도에서 잠금 끈, 체인 또는 다른 구속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10) 모든 비상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문의 결쇠 또는 손잡이

움직임에 의해 작동되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1) 야간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시동키가 "ON"의 위치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비활성화 될 것

나) 야간 잠금 장치는 시동키가 "ON"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 이상의 문에서 작동 상태로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경고기능을 가질 것. 이 경우 하나의 신호를 하나 이상의 문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B형 비상문

1) 비상문은 차실의 좌측면 뒤쪽(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차실의 중간위치보다 비상문 유효 폭 중심이 뒤쪽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차실 뒷면에 설치해야 한다.

2) 비상문 크기는 유효 폭 400mm 이상, 유효 높이 1,200mm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바퀴 위쪽에 비상문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은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450mm까지는 250mm 이상, 다른 부분은 400mm 이상, 유효 높이는 1,200mm 이상인 경우

나) 비상문 부근에 좌석이 설치된 경우 그 좌석은 쉽게 분리되거나 접혀야 하며 유효 폭은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650mm까지는 300mm 이상, 다른 부분은 400mm 이상, 유효 높이는 1,300mm 이상인 경우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비상문은 유효 폭 300mm 이상, 유효 높이 1,000mm 이상인 경우

라) 비상문을 제외한 출구의 수가 3개 이상인 중형승합자동차의 비상문은 열렸을 때 유효 폭 1,200mm 이상, 유효 높이 400m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된 경우

3) 비상문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안전하게 닫을 수 있고 비상시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차실 내·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문이 열린 후에 자중(自重)에 의해 닫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범퍼, 견인장치 등 탈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은 비상문 주위에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차실바닥면과 비상문의 아랫부분 사이에는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비상문의 위치와 비상문 조작방법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나 비상문 근처에 표기하여야 하며 등화장치를 사용하여 비상문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녹색을 사용해야 한다.

6) 비상문이 열렸을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비상창문

가. 비상창문의 규격은 500mm와 700mm 이상 규격의 직사각형으로서 면적이 0.4㎡ 이상일 것. 다만, 뒷면의 경우 너비 1,550mm와 높이 350m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각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0mm 이하일 것

나. 설치 기준

1) 힌지형 또는 분리형의 경우 밖으로 열려야 하며, 분리형은 작동시 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2) 비상창문은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자동차의 내·외부에서 작동 될 것

나) 안전유리(접합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은 제외)이어야 하며, 안전유리 적용시 비상창문 근처에 각각의 비상창문을 켤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것

3) 자동차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비상창문은 자동차의 내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4) 상단 끝부분 힌지로 고정된 수평형 비상창문의 경우 창문을 완전열림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힌지형 비상창문은 자동차의 내·외부로부터 통행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안전유리로 된 비상창문의 하단면은 원동기 및 타이어가 설치되는 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으로부터 500mm 이상 1,200mm 이하(힌지형의 경우 650mm 이상 1,200mm 이하)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힌지형 비상창문에 650mm 구조물이 설치된 경우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이 비상창문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 비상창문의 하단면은 원동기 및 타이어가 설치되는 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 500mm 이상 1,200mm 이하에 위치할 수 있다.

6) 힌지형 비상창문의 닫힘 여부를 운전자석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구조인 경우 열림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비상탈출구

가. 설치 개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로서 좌석 승객이 입석 승객보다 많은 경우와 승차정원 23인 이하의 입석이 없는 승합자동차에는 비상탈출구를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및 굴절버스인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승차정원	최소 비상탈출구 개수(개)
30인 이하	1
30인 초과	2

나. 설치 위치 및 크기

- 1) 비상탈출구가 1개인 경우 차실을 3등분한 중앙부에 설치해야 한다.
- 2) 비상탈출구가 2개인 경우 비상탈출구 가장 가까운 지점 사이의 거리는 2m 이상 이어야 한다.
- 3) 비상탈출구의 면적은 0.45m² 이상이며 비상탈출구의 크기는 600mm × 700mm 직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치 기준

- 1) 비상탈출구는 차량의 내·외부에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동해야 한다.
- 2) 천정형 비상탈출구는 분리형, 힌지형, 안전유리로 제작해야 한다.
- 3) 바닥형 비상탈출구는 힌지로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 4) 바닥형 비상탈출구가 안전하게 닫히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시 5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잠기는 바닥형 비상탈출구는 제외한다.
- 5) 분리형 비상탈출구는 작동시 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바닥에 설치된 분리형 비상탈출구는 차실 안쪽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 6) 힌지형 비상탈출구는 차량의 앞면이나 뒷면 방향으로 100도 이상의 각도로 열려야 한다. 다만, 바닥에 설치된 힌지형 비상탈출구는 차실 안쪽으로부터 열려야 한다.
- 5) 비상탈출구는 차량 내·외부에서 열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6) 파손이 가능한 비상탈출구인 경우 자동차 내부의 주변에 깔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7의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
(제90조제2호관련)

1. ~ 10. (생략)

11.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기준

순번	적용대상 차종	적용기준
1	가. 차량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다음의 승합자동차. 다만, 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차정원 23인 이하이고 입석공간이 있는 구조 2) 승차정원 23인 초과이고 순번 2 적용대상 차종의 가목2) 또는 3)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아래 가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Ⅰ)
2	가. 차량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다음의 승합자동차. 다만, 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차정원 23인 이하이고 입석공간이 없는 구조 2) 승차정원 23인 초과이고 좌석공간만 있는 구조 3) 승차정원 23인 초과이고 주로 좌석공간이 있는 구조이나 2개의 2인용 좌석공간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에 해당하는 별도 공간 또는 통로공간에 일부 입석공간이 있는 구조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견인형 특수자동차	아래 나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길이 10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 나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의 견인 측정시험기준. 다만, 구동전동기로 일부 또는 전체의 동력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감속능력 기준(Ⅱ)의 감속도 측정시험기준을 적용한다.

가.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Ⅰ)

구 분	감속도 측정시험 기준	견인 측정시험 기준
적용 기준	감속도 $0.5m/s^2$ 이상	(고온제동능력시험) 가)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0.15V + 0.0103V^2$ 이하, $3.75m/s^2$ 이상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견인형제외) $0.15V + 0.0117V^2$ 이하, $3.30m/s^2$ 이상
측정 조건	가) 25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이 기어의 최대속도에서 가속 페달 해제와 보조제동장치 작동시켜 5km/h의 속도가 감속되는 시간(초) 측정(다만, 25km/h의 속도는 측정 범위에 있을 것)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출 $f = \frac{1.39}{t}$ f = 제동감속도(m/s^2), t = 시간(초) 다)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만을 사용 라) 왕복으로 총 2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기준 적합여부 판정	(가열시험과정) 가)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 6% 계산 나) 시험대상자동차로 30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다)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인장력계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 라) 견인자동차로 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며 주행 시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의 6% 이상이 인장력계에 부하가 걸리도록 주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주행 마) 6km 이상의 거리 주행 후 최대한 빨리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를 분리시키고 시험대상자동차의 고온제동능력시험 실시
측정 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적차상태(시험대상자동차)
적용 방법	감속도 측정시험 부적합 시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나.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

구 분	감속도 측정시험 기준	견인 측정시험 기준
적용 기준	제동감속도 $0.6m/s^2$ 이상 (다만, 제11호 순번3 적용기준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9m/s^2$)	가) 시험대상자동차의 해당 인장력을 유지하여 6km 이상의 거리를 주행 완료할 것

	이상을 적용한다)	나) 주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험대상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인장력을 유지하여 6km 이상의 거리 주행 중 주제동장치의 온도는 100°C 이하일 것
측정 조건	가) 25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이 기어의 최대속도에서 가속 페달해제와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켜 5km/h의 속도가 감속되는 시간(초) 측정(다만, 25km/h의 속도는 측정 범위에 있을 것)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출 $f = \frac{1.39}{t}$ f = 제동감속도(m/s^2), t = 시간(초) 다)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만을 사용 라) 왕복으로 총 2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기준 적합여부 판정	가) 시험대상자동차를 30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인장력계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 다) 견인자동차로 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여 주행 시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순번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총중량이 26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6톤)의 7%(다만, 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10%) 이상이 인장력계에 부하가 걸리도록 보조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6km 이상의 거리를 주행 라) 주제동장치, 주차제동장치, 비상제동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됨
측정 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적차상태(시험대상자동차)
적용 방법	가) 감속도 측정시험 부적합 시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나) 원동기 성능과 영향이 없는 보조제동장치는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12. ~ 18. (생 략)

[별표 51]

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관련)

1. 주제동장치 및 보조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구 분		주제동장치 및 보조제동장치 제동능력
주제동장치	제동초속도(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0.1V + 0.007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5.00 이상
보조제동장치	제동초속도(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2.50 이상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및 경적차 상태 (보조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적차 상태일 것)
측정 시 조작력(N)		5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잡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 제동초속도(km/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도 값을 말한다.
3. "고마찰로"란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지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깨끗하고 건조하며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
4. "최대제동계수(P)"란 회전하는 타이어의 최대감속도를 기준으로 타이어와 노

면마찰의 수치를 말한다.

5. "바퀴잡김"이란 제동 시 바퀴의 회전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고온제동능력 기준

가. 기준시험

구 분	기준시험
제동초속도(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상태
측정조건	제1호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주제동장치의 조작력,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 측정
측정 시 조작력(N)	500 이하
측정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시험노면	고마찰로

주)

"기준시험"이란 가열절차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되는 제동시험을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나. 가열절차

구 분	가열절차
시험속도(km/h)	최고속도의 70% 속도
시험노면	고마찰로
시험조건	- 첫 번째 정지 이전에만 100°C 이하로 하여 위 시험속도의 80%에서 10%까지 $3.0 \sim 3.5m/s^2$의 감속도에 상당하는 조작력으로 주제동장치 작동 - 각 정지 시 위 시험속도에서 시험속도의 50%까지는 가장 높은 적절한 기어로 연결된 상태이며, 시험속도의 50%에서 정지까지는 엔진 미연결 상태(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 첫 번째 정지 후 정지연속횟수: 10회 - 첫 번째 정지 후 연속정지 시 간격: 1,000m

주)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은 주차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고온제동능력(가열 후) 기준

구 분	고온제동능력(가열 후)
측정조건	• 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제동초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노면) • 위 가열절차 완료 후 1분 이내 기준시험 시 측정된 조종장치의 조작력 이하로 작동시켜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 측정
기 준	• 제동거리(m) $S_2 = 1.67 \times S_1 - 0.67 \times 0.1V$ 이하일 것 S_1: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S_2: 위 측정방법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 평균최대감속도(m/s^2)는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평균최대감속도(m/s^2)의 60% 이상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잡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주차제동능력 기준

구 분	주차제동능력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상태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4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기 준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8%인 경사로에서 위 방향 및 아래 방향으로 각각 5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

4.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 시 제동능력
제동초속도(km/h)	50 및 최고속도의 80%
제동거리(m)	$0.1V + 0.011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3.30 이상
측정자동차 상태	정적차 상태
측정 시 조작력(N)	4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 조건	• 유압시스템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서 누설고장 시 잔류하는 다른 계통으로 제동성능 확인 • 계통을 변경하여 누설시켜 반복 확인
시험 노면	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잡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5. 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	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 시 제동능력
제동초속도 (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2.50 이상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상태
측정 시 조작력(N)	5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 조건	동력지원이 되지 않는 주제동장치에 대하여 제동성능 확인
시험 노면	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잡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동력지원제동장치"란 제동력 발생을 위한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예, 진공부스터를 갖추어 지원되는 진공압)에 의하여 지원되어 운전자의 근육 힘으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6.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초소형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기준

구 분	고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제동초속도 (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0.0063V ² 이하	0.0056V ² / P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 ²)	6.17 이상	6.87 × P 이상
측정자동차 상태	경적차 상태	
측정조건	제동 시 10km/h이상의 속도에서 최대사이클로 동작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1. P: 최대제동계수
2. "최대사이클"이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 조절바퀴의 잠김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동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저마찰로"란 0.45 이하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지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깨끗하고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나.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바퀴잠김 확인시험 기준

구 분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바퀴잠김 확인시험
제동초속도 (km/h)	- 고마찰로: 80 또는 최고속도의 80% 중에서 낮은 속도 - 저마찰로: 60 또는 최고속도의 80%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조건	제동 시 10km/h이상의 속도에서 최대사이클로 동작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자동차 상태	경적차 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비균일노면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기준

구 분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제동 시 경계지점 통과속도 (km/h)	50 또는 최고속도의 50%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조건	제동 시 10km/h이상의 속도에서 최대사이클로 동작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자동차 상태	경적차 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고마찰로의 경우 최대제동계수가 0.8 이상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 시 경계지점에 뒷바퀴 통과 후 1초 이내 자동차의 감속도가 증가할 것	

라.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

구 분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제동능력
제동초속도(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0.1V + 0.0143V ² 이하
평균최대	2.7 이상

감속도 (m/s ²)	
측정시 조작력 (N)	500 이하
측정자동차 상태	정적차 상태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 조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전기장치를 고장상태로 설정
시험 노면	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15조제2항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4. (현행과 같음) 65. “공유구역”이란 손조작성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가 표시되는 구역 중에서 2개 이상의 식별표시,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
<u><신설></u>	66. “자동차의 3차원 기준좌표계”란 차량중심선을 x축(앞쪽‘-’, 뒤쪽‘+’), 너비방향을 y축(오른쪽‘-’, 왼쪽‘+’), 높이방향을 z축(아래쪽‘-’, 위쪽‘+’)으로 하고 수직중단면 x-z, 수평면 x-y, 수직횡단면 y-z로 구성되는 좌표계를 말하며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생략)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적합하여야</u>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적합해야</u>

	준에 적합한 가변축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 축의 하중이 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최대 15톤까지)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수동조작장치를 사용하여 가변축을 상승조작하는 경우 자동차 전방방향으로 가변축보다 앞쪽에 설치된 차축 중 최소 1개 이상은 지면에서 들리지 않을 것 3. 험로 탈출 등 일시적으로 조작한 후 매시 30킬로미터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하강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일 것		
제15조(제동장치) ①자동차(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제동장치) ①-----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에는 2개(에너지 저장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힘으로만 기계적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1개) 이상의 독립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에너지저장장치는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제15조(제동장치) ①-----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⑭ (생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① ~ ④ (생략)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자동차-----		
제30조(비상탈출장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	제30조(비상탈출장치) -----		
	----- 설치해야 -----.		
	제40조(차폭등) -----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 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삭 제>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 ----- -----. ----- ----- ----- --.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pm y$ 방향으로 각각 1,000밀리미터인 지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 2,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직사각형 영역에 설치된 직경 89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

2.·3. (생 략) <신 설>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자동차 좌·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 1,0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직사각형 영역을 말한다)에 있는 직경 76밀리미터·높이 1,000밀리미터의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일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적합하여야</u>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①·② (생략)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u>적합하여야</u> 한다. 1. ~ 3. (생략)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	나.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③ ----- ----- ---- <u>적합해야</u> -----. 1. ~ 3. (현행과 같음) 4. 경고음의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 이를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를자동차의 구동축전지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적합해야</u> -----. 1. ~ 3. (현행과 같음)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1열	제108조의2(연료소비율) ① (생략)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및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좌석 외의 좌석에 설치되는 어깨부분부착장치가 다음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보다 낮은 범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부분부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높이조절장치 등이 있어 어깨부분 안전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나. 높이조절장치 등이 탑승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제108조의2(연료소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 ----- -----
--	--	---	--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u>소형화물자동차</u>	----- ----- <u>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u>자동차</u> 2층대형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u>나목</u> 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 ----- ----- ----- ----- -- <u>자동차</u> , ----- ----- <u>가목2)</u> ----- ----- ----- ----- ----- ----- ----- ----- ----- -----.
② ~ ⑰ (생략)	② ~ ⑰ (현행과 같음)